

해커스 박철한 강사

헌법 총평 및 해설

1. 올해 기출문제의 체감난도

체감난이도는 사람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최근 시험중에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었다 생각된다. 약간 어려운 문제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답을 고르는데 크게 문제 없는 문제들이 다수를 차지했던거 같다. 물론 최신 판례와 신유형의 문제들이 등장하였으나, 전반적으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출제의 형태

(1) 출제유형

7급 시험은 역시 판례가 많이 출제된다. 다만 60%정도라면 과거보다 약간 적게 출제된 것으로 보이며, 헌법조문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낮은 문제인데...3-5문제나 출제된 것은 전반적으로 난이도를 낮게 만든 요인이다. 법령 문제도 국적법등 기본적인 부속법령이나 헌법조문과 함께 출제된 것들이 많아 어렵지 않았다.

판례		법령	
판례	최신판례	헌법조문	법령
7	5	5	3
35%	25%	25%	15%

(2) 출제범위

출제범위는 과거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통치구조에 포함시키면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출제가 비슷하며, 헌법총론은 2-3문제가 보통 출제되었고, 현재도 2-3문제 출제되어서 과거와 비슷하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

헌법총론	기본권	통치구조	헌법재판소
3	9	6	2
15%	45%	30%	10%

(3) 문항 출제 방식 변화

과거에는 90% 이상이 선다형이었으나, 올해는 케이스가 2문제 정도 출제되었으며, 1문제는 조합형이었다. 조합형의 경우에는 다른 시험에서도 자주 등장해서 생소하지 않으나, 케이스 문제는 난이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올해는 쉽게 출제되었으나, 향후 판례변형 케이스가 출제될 수 있으니 A급 판례 중심으로 케이스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3. 향후 대책

사실 시험은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어서 이번 시험이 쉬웠다고 해서 다음 시험도 쉬울 것이라 예측하기는 힘들다. 다만 케이스 방식의 출제방식 변화나, 14번처럼 위헌은 위헌인데 양심이 아닌 인격권 침해처럼 갈수록 판례 결론이 아닌 내용을 묻는 지문들이 선보이고 있다. 이는 판례를 갈수록 깊게 공부해야 하는 부담을 주게 된다. 또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최신판례는 지속적으로 계속 출제되고 있으며, 최신판례

도 단순 결론보다는 그 내용을 묻고 있어서 향후에도 심도있게 최신판례를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올해도 순수 이론 문제는 거의 보이지 않았다. 결국 수험생들은 이론보다는 판례를 얼마나 심도 있게 공부하느냐가 합격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경우에는 어차피 조문은 나도 알고 다른 수험생들도 아는 것이고, 올해처럼 법령이 나오면 부담없이 풀 수 있으나, 국회법이나 공선법을 아주 깊은 부분까지 출제하면 나도 모르고 다른 수험생들도 알기 힘들 것이다. 결국은 다른 학생들보다 비교 우위를 얻으려면 판례를 심도있게 공부해서 어떤 문제든 맞출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1 정답 ③

- ① 90일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심판대상조항이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을 제소기간의 기산점으로 정한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18.6.28. 2017헌바166).
- ② 보상금 등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 재판상 화해의 성립을 간주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으나,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규정한 헌법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헌재 2018.8.30. 2014헌바180).
- ③ 영장절차 조항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그 영장발부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8.8.30. 2016헌마344).
- ④ 재정신청은 수사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재판절차이다. 이런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재정신청절차는 일률적으로 구두변론절차를 거치도록 하기보다는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구두변론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2018.4.26. 2016헌마1043)

2 정답 ②

- ① 국무회의는 대통령 ·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헌법 제88조 제2항)
- ②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3. 헌법개정안 · 국민투표안 · 조약안 ·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헌법 제89조)
- ③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헌법 제90조 제2항).
- ④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헌법 제91조 제2항).

3 정답 ④

- ①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은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사법권의 독립 및 법관의 양형판단권을 침해한 위헌법률조항이라 할 수 없다(헌재 2011.9.29. 2010헌바346)
- ② 법관징계법 제27조 제1항 그대로
- ③ 퇴직사유는 헌법이 정하고(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 퇴직절차는 법률유보를 두고 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기타법관은 대법원장이 퇴직시킬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47조).

-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3항).

4 정답 ①

-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헌법 제128조 제1항).
 ② 헌법 제128조 제2항 조문 그대로
 ③ 헌법 제130조 제2항 조문 그대로
 ④ 헌법 제130조 제1항 조문 그대로

5 정답 ①

- ㄱ.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료보험 요양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등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기본권 제한규정으로서 헌법에 합치되기 위하여서는 위임의 경우에 요구되는 헌법상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단지 보험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건복지부령에 정하여질 요양기관지정취소 사유를 짐작하게 하는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헌법상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헌법 제75조 및 제95조에 위반되고, 나아가 우리 헌법상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의 원리, 법치주의의 원리, 의회입법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헌재 2002.6.27. 2001헌가30)
- ㄴ. 재생사업지구지정에 대한 절차는 전문적·기술적 능력과 함께 정책적 고려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를 신중적이고 탄력적으로 규율할 필요성이 크고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75조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한계 내에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재 2018.12.27. 2017헌바43)
- ㄷ. 이 법률조항 중 “연부금액의 범위”, “취득시기” 부분은 위임사항을 분명히 특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부분은, 취득세의 본질, 취득당시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명정한 제111조 제1항의 취지, 동조 제3항, 제5항, 제6항 등의 관련조항을 종합하여 보면 그 대강의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 여기에 취득물건의 종류와 취득행위 개념이 다기·다양하므로 가액산정의 원칙과 주요한 경우의 산정방식을 제시한 이상, 그 틀 안에서 보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산정방식을 탄력적 규율이 가능한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1헌바32 2002.3.28.).
- ㄹ.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는 법인의 신설, 전입 등으로 인한 등록세 중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구와 경제력의 편중을 억제함으로써 지역간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정하여 질 “대도시” 에는 우선, 단위도시 그 자체로 지역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정치·경제생활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가 해당될 것임은 물론, 나아가 그러한 특징의 대도시를 인근도시들이 둘러싸거나 또는 대도시에 이르지 못하는 여러 도시군(群)이 집합체를 이룸으로써 대도시권역을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법률조항은 중과세되는 부동산등기의 지역적 범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다음 단지 세부적, 기술적 사항만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02.3.28. 2001헌바24).

6 정답 ③

- ① 국가유공자의 가족은 헌법상 가산점의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차별로 인한 불평등 효과는 입법목적과 그 달성수단 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헌재 2006.2.23. 2004헌마675).
- ② 적절한 치과 의료전달체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치과일반의와 치과전문의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 협력을 적절하게 구축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1차 의료기관의 전문과목 표시에 대한 불이익을 주어 치과전문의들의 2차 의료기관 종사를 억지로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에 따라 자신의 전문과목의 환자만 진료해도 충분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치과교정과 등 일부 인기 전문과목의 치과전문의들만 치과의원에서 전문과목을 표시하게 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오히려 인기 전문과목에의 편중 현상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15.5.28. 2013헌마799).
- ③ 심판대상조항은 2003년과 2007년경부터 규정된 것이어서 해당 직류의 채용시험을 진지하게 준비 중이었다면 누구라도 직업상당사 자격증이 가산대상 자격증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며, 자격증소지를 시험의 응시자격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각 과목 만점의 최대 5% 이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점, 자격증 소지자도 다른 수험생들과 마찬가지로 합격의 최저 기준인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는 점, 그 가산점 비율은 3% 또는 5%로서 다른 직렬과 자격증 가산점 비율에 비하여 과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이 조항이 피해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헌재 2018.8.30. 2018헌마46).
- ④ 우체국보험에 가입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보험회사의 인보험에 가입한 경우와는 달리 그 수급권이 사망, 장애나 입원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만기나 해약으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별조차 없이 그 전액에 대하여 무조건 압류를 금지하여 우체국보험 가입자를 보호함으로써 우체국보험 가입자의 채권자를 일반 인보험 가입자의 채권자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협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08.5.29 2006헌바5)

7 정답 ④

- ①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헌재 2000.6.1. 98헌마216).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②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국민연금제도와 같은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제도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사회부조의 방식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각종 급여나 각종 부담의 감면 등을 총괄한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1. 4. 26. 2000헌마390).
- ③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이러한 생계유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교도소·구치소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보충급여의 원칙에 따라 중복적인 보장을 피하기 위하여 개별가구에서 제외키로 한 입법자의 판단이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단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1. 3. 31. 2009헌마617).

- ④ 위 수급권은 천부적으로 가지는 권리가 아니며 법률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그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신청한 달로부터 발생한다. 청구인이 기대하는 보상수급권이 구체적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은 국가의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법률적 차원의 권리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같이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는 헌법상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의 이념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에 명백하게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심판대상 법조항 중 제5조 제1항이 기본적 인권존중에 대한 헌법 제10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헌재 2010.5.27. 2009헌바49)

8 정답 ①

- ①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가 ‘품위 손상’, ‘위신 실추’와 같은 추상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수범자인 법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적용범위가 모호하다거나 불분명하다고 할 수 없고, 법관이 사법부 내부 혁신 등을 위한 표현행위를 하였다는 것 자체가 위 법률조항의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행위가 이루어진 시기와 장소, 표현의 내용 및 방법, 행위의 상대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것이므로, 구 법관징계법 제2조 제2호는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포괄적이어서 법관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 2012.2.23. 2009헌바34).
- ② 본인확인제를 규율하는 이 사건 법령조항들은 본인확인이라는 방법으로 게시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제한하여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키고 그 결과 헌법으로 보호되는 표현까지도 억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손○규 등의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청구인 회사의 언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헌재 2012. 8. 23. 2010헌마47).
- ③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수반하므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표현에 위축적 효과가 미치지 않도록 규제되는 행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2016.2.25. 2013헌바105).
- ④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이 선거운동의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허용되는 방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후보자가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 공약 등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이상, 심판대상조항은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제한에 해당하여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헌재 2018. 2. 22. 2016헌바364).

9 정답 ②

- ①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그대로
- ②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규정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③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7조 그대로
- ④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그대로

10 정답 ②

- ① 일본인 여자가 한국인 남자와의 혼인으로 인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동시에 일본의 국적을 상실한 뒤 한국인 남자와 이혼하였다 하여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일본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동녀가 일본국에 복적할 때까지는 여전히 한국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한다(대결 1976.4.23, 73마1051).
- ②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1의2.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국적법 제5조 일반귀화의 요건)
- ③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재외국민에게는 대통령선거권, 국회의 원선거권, 국민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14.7.26, 2009헌마256). 국내거주 재외국민에게 주민참정권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7. 6. 28. 2004헌마643).
- ④ 정부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구소련거주동포와 중국거주동포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수혜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헌재 2001. 11.29, 99헌마494).

11 정답 ③

- ① 신문 및 도서열람제한 조항은 최장 30일의 기간 내에서만 신문이나 도서의 열람을 금지하고 열람을 금지하는 대상에 수용시설 내 비치된 도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항들이 청구인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6. 4. 28. 2012헌마549).
- ②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에 해당하고, 이에 의한 등급분류보류는 비디오물 유통 이전에 그 내용을 심사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 즉 검열에 해당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헌재 2008. 10. 30. 2004헌가18).
- ③ 건강기능식품법상 기능성 광고의 심의주체는 행정기관인 식약처장이며, 법상 언제든지 위탁을 철회하고 직접 심의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심의기관의 장이 위원을 위촉하려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식약처장이 일정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위원의 수와 구성 비율, 위원의 자격과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위촉 방식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규율하는 등으로 법령을 통해 행정권이 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개입하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는 이상 그 구성에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판례 변경)(헌재 2018.6.28, 2016헌가8).
- ④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여 심리, 결정하는 것이어서 헌법에서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재 2001. 8. 30. 2000헌바36).

12 정답 ④

- ①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헌법 제89조)
- ②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헌법 제81조).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헌법 제62조 제2항) 조문을 볼 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은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의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의무가 없다.
- ③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79조).
- ④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제53조 제1항).

13 정답 ②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따라서 기산점은 그 사유가 언제 존재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사안에서 청구인甲에게 공권력이 행사된 것은 2001.3.16.일에 자비물품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를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청구기간이 시작된 날을 묻고 있기 때문에 뒤의 내용들은 핵심이 아닌 함정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4 정답 ③

- ①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49).
- ②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대다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의 측면이나 한국방송공사에게 보장된 방송자유 측면에서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한다(헌재 1999. 5. 27. 98헌바70).
- ③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사과행위를 강제함으로써 방송사업자의 인격권을 제한하며, 이러한 제한이 그 목적과 방법 등에 있어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헌재 2012.8.23. 2009헌가27). 상당히 조소해야 할 부분이다. 사안에서 문제된 방송사업자는 주식회사 문화방송이다. 즉 법인이다. 법인의 경우 과거에도 사과방송은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으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법인의 양심의 자유의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 ④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의 중계송신업무만 할 수 있고 보도, 논평, 광고는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규제는 방송사업 허가제, 특히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제를 유지하기 위한 제한으로 헌법상 경제질서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1.5.31. 2000헌바43 등).

15 정답 ①

- ①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의하여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함으로써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그 지문정보가 경찰에서 범죄수사목적 등으로 이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히면서, 위 조항에 의한 지문정보의 수집 및 경찰의 지문정보의 보관·전산화·이용을 포괄하는 의미의 지문날인제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헌재 2005. 5. 26. 2004헌마190).
- ②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로 하여금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하고 있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지문정보의 수집에 관한 규정이고,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지문은 그 정보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다(헌재 2015. 5. 28. 2011헌마731).

- ③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헌재 2014. 8. 28. 2011헌마28).
- ④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로는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제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 인격권 또는 위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원리와 민주주의원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으로 보호하려는 내용을 위 각 기본권들 및 헌법원리들 중 일부에 완전히 포섭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헌법적 근거를 굳이 어느 한두 개에 국한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이들을 이념적 기초로 하는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16 정답 ②

- ①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의 해석으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해낼 수 있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헌재 2004.2.26. 2003헌바4).
- ②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인 명확성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본권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된다(헌재 2015. 5. 28. 2013헌마799).
- ③ 상표는 형태가 다양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표현도 달라지기 마련이므로,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법규범의 적응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어느 정도 망라적인 의미를 가지는 내용으로 입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의미를 법관의 보충적 해석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어떠한 상표가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를 합리적인 해석기준을 통하여 판단할 수 있는 이상,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법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14. 3. 27. 2012헌바55).
- ④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한다(헌재 2008. 11. 27. 2007헌가13).

17 정답 ④

-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헌법 제47조 제1항).
- ②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헌법 제49조).
- ③ 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헌법 제44조 제2항).
- ④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헌법 제47조 제3항).

18 정답 ④

- ①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헌재 2007.8.30, 2004헌마670).
- ②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 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친다(헌재 2011. 7. 28. 2009헌마408).
- ③ 해고예고제도는 근로관계의 존속 그 자체를 보호하는 제도라고 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근로관계의 존속이라는 근로자보호의 본질적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제도를 둘 것인지 여부, 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넓은 입법 형성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헌재 2001. 7. 19. 99헌마663).
- ④ 오늘날 가산점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수가 과거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취업보호 대상자에서 가족이 차지하는 비율, 공무원시험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헌법 제32조 제6항은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 조항의 대상자는 조문의 문리해석대로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그리고 ‘전몰군경의 유가족’ 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 경우 그러한 가산점의 부여는 헌법이 직접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입법정책으로서 채택된 것이라 볼 것이다(헌재 2006.2.23, 2004헌마675).

19 정답 ①

- ① 급식활동 자체가 의무교육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형성권의 범위를 넘어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헌재 2012. 4.24, 2010헌바164).
- ② 의무교육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에는 의무교육이 실질적이고 균등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본질적 항목으로,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시설 및 그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 부담으로부터의 면제가 포함된다 할 것이며, 그 외에도 의무교육을 받는 과정에 수반하는 비용으로서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 ③ 의무교육과정에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 마련은 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몫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를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충당하는 것은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분명히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헌재 2012. 8. 23. 2010헌바220).
- ④ 판례는 사립의 경우 국공립과 비교할 때 많은 자율성이 인정되고 독자적인 건학이념의 실현을 위하여 사인 또는 법인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학교로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국·공립과는 그 목

표하는 바가 다르다고 보아 사립학교가 이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위헌으로 보지 않았다(헌재 2006. 10. 26. 2004헌마13).

20 정답 ④

기존 방식과 달리 괄호넣기 문제로 신유형으로 보인다. 다만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일단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권한쟁의를 청구하여야 하며, 그 상대방은 권한쟁의 심판에서는 처분 또는 부작위를 야기한 기관으로서 법적 책임을 지는 기관만이 피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이 사건 권한쟁의 심판은 의안의 상정·가결선포 등의 권한을 갖는 피청구인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되어야 한다(헌재 2009.10.29, 2009헌라8). 또 예산안 제출권은 정부만 가지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제출권을 침해할 수 없다. 사안은 당연히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주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